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용승*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다문화수용성 증대는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정책 구현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전제 아래 '사실', '당위', '이익', '옳음'의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 네 가지 정당화 논리는 서로 겹치는 것은 물론 상호 규율관계에 있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담론과 교육, 정책을 제시하였다. 담론으로서는 한국 사회의 이질성, 연구자의 역할, 반다문화주의 논쟁 활용, 주민권/구성원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다문화'의 폐지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조 변경과 커리큘럼의 전반적 변경을 말하고, 다문화시민성 함양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이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책으로서는 다문화정책이 야기하는 정책 피로감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대상의 확대, 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 반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영향분석평가 등을 언급하였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약자보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어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정책, 다문화 시민교육, 주민권, 정책 피로감

1. 문제의식

우리 사회가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는 발견하기 어렵다. 2015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2011년에 비해 약 3점의 상승이 있었으나 미미한 변화이며, 절대 수치 또한 53.95점으로 평이한 수준이다. 2015년 전국 다문

이 글은 2016년 6월 21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6년 제1차 다문화가족 포럼: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대구대, 정치학, yiyongseung@gmail.com

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맺음은 2012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었다. 다른 지표가 대체로 호전된 것에 견주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정책뉴스 참조). 애쓰는 데 비해 성과는 저조하다. 외려 반다문화주의, 다문화 혐오인식이 가감 없이 배출되는 현상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현상이 이어지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쉽게 보아 정책의 오류 내지는 미숙한 시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고, 단일민족의식의 잔영과 인식 틀로써 민족주의의 지속,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을 보는 것이 '일상 다반사'가 된 현실 등으로 원인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 보도가 늘어난 것도 다문화수용성을 제자리걸음 시키는 주요한 원인일 수 있겠다. 원인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이러한 교착상태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은 필요하다. 물론 현상의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현상의 근원보다는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내지는 감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¹

최근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을 후퇴로 볼 것인지 혹은 현실을 반영한 조정으로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후퇴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다문화정책을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다문화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정체되고, 반다문화현상이 부상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18-19)에서 국민들이 “외국인 범죄, 인종·문화적 갈등 우려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다문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

1 필자는 다른 글(Lee, 2015)에서 반다문화주의의 부상 원인으로 정책적 피로감과 미디어의 태도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대안은 원인과는 연관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답보상태에 처한 원인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대안 논의에서 원인에 대한 고려를 하였다.

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와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한다. 과거에는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는 국민들의 반다문화 정서를 반영하여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상호 상승효과를 낼지, 충돌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 정책 태도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다문화수용성 관련 연구는 측정도구 개발이나 측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황성욱 외, 2014), 국민 전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윤인진 외, 2009; 황정미, 2010). 특히 후자는 교육학 분야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정형화되어 있고, 결과도 현실에 큰 함의를 갖기 어렵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졌지만 부족했던 담론과 방안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앞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단지 한국 사회의 인구구성 다양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에서 자동적으로 도출하거나 그로 인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 가운데 먼저 다문화수용성은 왜 높여야 하는지를 다루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해야 하는가?

아래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까닭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사실,’ 당위, 이익, 옳음이 그것인데, 이 네 가지의 정당화 논리는 각

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상호규율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구 및 문화 다양성에 열려있는가를 의미하는 다문화수용성은 그것 자체로 목적의 전부를 구성하기보다는 다문화정책과 그것이 지향하는 다문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수단적 의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서술할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까닭과 많은 부분 겹친다. 국민 다문화 인식 제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구성 부문이자,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을 구성한다.²

다시 돌아와서 먼저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인구구성의 다양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당위가 되지 않는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문화수용성 제고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사실’은 당위의 논리로 이어져야 한다. ‘당위’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주민을 초청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지이다. 또한 당위의 논리는 장래 예상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로부터도 발생한다. 그러나 당위의 강제는 주류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주민을 갈등의 근원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해서 당위는 또 두 가지 관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주류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익 관점이 필요하고, 문제 집단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옹옴의 논리가 동원된다. 끝으로 이익 관점은 옹옴의 준거에 따라 제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는 것은 역으로 이익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거나 이익이 없다고 판명되면 지지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민 인식 개선은 2006년 정부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모든 정책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16)가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2016년도 시행 계획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주요 사업 영역으로 상정되어 있다.

1) '사실'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사실' 자체에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거주 이주민 숫자는 급속히 늘었고, 이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³ 저출산·고령화, 성비 불일치 등 한국 사회의 균형적이지 못한 인구구조는 이주민 유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국내 경제상황이나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이주민 유입은 영향을 받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 단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예측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민 유입 원인이나 가치 판단을 떠나 '현실'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인구구성 다양화는 기정사실에 가깝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고, 통제를 염두에 둔 사람들은 이제라도 외국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못된다.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을 끌어당기는 요인(pull-factor)이 많고, 개인의 이주 욕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개인의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구조의 문제다.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 또한 개인일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어렵다.

한국에는 약 30만 5천명의 결혼이주민이 살고 있고, 그 가족을 합치면 90만 명에 육박한다.⁴ 근래 정부의 정책변화로 결혼이주민 유입 숫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하튼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화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제결혼을 부추긴다. 민족적 섞임(melange) 혹은 민족적 혼종성(hybridity)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아울러 아직까지 한국의 인권 감수성이 그에 미치지 못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재결합'을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주민 유입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옳고 그름을 떠나 단지 '사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관건은

3 2016년 4월 기준 장단기 체류외국인은 1,972,580명(장기체류 1,469,703명)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4 정확히계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결혼이주민 및 인지·귀화자는 305,446명, 자녀는 207,693명이다. 전국 다문화가구는 278,036 가구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3.16명이다(다누리, 정책뉴스 참조).

어떻게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 혹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순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한국의 고질적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이민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 153)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영어로 ‘immigration policy’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민정책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적은 없다.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에 걸쳐 이주민이 늘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

그러나 ‘사실’로부터 당위와 규범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수 있다. ‘사실’은 그저 인정의 문제일 뿐, 가치판단은 그 다음 수순이다.

2) 당위

한국 사회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는 다분히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성비 불균형, 산업수요 등은 모두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일례로 한국으로의 이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은 발전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이주노동자들 또한 한국의 산업인력수요 불균형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주민이 동원된 측면이 크다. 이주민 증가라는 현상이 대부분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 결과라면, 해당 사회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주민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와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다. 필요에 의해 사람을 초청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

합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난점은 국가 혹은 사회의 필요가 곧바로 개인의 필요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일일지라도 개인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를 미칠 수도 있다.⁵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과업을 단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그들을 충분히 배려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본다. 특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경우 관계된 사람들을 단지 정책의 대상으로, 또는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대의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데서 발생한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당위의 두 번째 측면은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테러는 인종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테러범은 외국에서 잠입한 경우도 있지만 테러를 당한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가 다수이다. 물론 테러는 인종 혹은 종교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현하는 충격이 자못 크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에 기원을 둔 테러는 국가 내외에서 그러한 갈등을 제대로 조율해내지 못할 경우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어찌면 테러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개인과 소수집단의 비참함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테러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비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이다. 그것의 원인을 파헤치고 의지를 갖고 그 원인과 겨룰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인종(ethnicity) 혹은 문화적 결속 요구보다 더 큰 정치적 폭력과 잔인함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으며, 인종 정치에 흔히 수반되는 폭력과 잔혹, 굴욕은 인종성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Levy, 2000: 2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아직까지 한국은 인종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없

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이주민과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이유는 이로부터 찾을 수 있다.

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문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발전시킬 기회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은 인종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전에, 즉 이주민의 숫자가 큰 규모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갈등을 고민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해 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불평등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 분열”(키슬·밀러, 2013: 88)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시 있을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고, 안정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것이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 내지는 갈등을 예상하여 다문화정책 혹은 다문화감수성을 옹호하는 것은 이주민을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위험도 사리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정책은 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 혹은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정책 대상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의도치 않게 표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주민을 문제 집단화하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의도는 좋으나 결과는 나쁜 조합이다. 따라서 정책은 단지 문제 해결적 관점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더 너른 가치지향, 예를 들자면 인간존엄, 평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도구이자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할 때 이주민에 대한 의도치 않은 편견 조장을 제어하면서도 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익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이익의 시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익은 소극적 의

미로서 갈등 방지와 이에 따른 안전의 이익, 적극적 의미로서 다양성의 긍정적 활용에 따른 사회의 활력 제고로 구분 가능하다. 전자는 2.3의 당위 부분과 겹친다. 후자는 문화 다양성이 가져올 이익을 고려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사회 내 공존하는 여러 문화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낳고,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경유하여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⁶ 사회 발전은 당연하게도 구성원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또한 문화 다양성은 “유사 미학적 관점에서 더 흥미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용할지도 모르는 대안 모델을 다른 문화가 포함”(Kymlicka, 2010: 249)하고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 절에서 말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주민 유입을 허용했다는 점 또한 한국 사회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은 “계몽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Kymlicka, 2010: 253)이다. 즉 즉자적 이익이 아니라 남과 집단을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대자적 이익 관점을 취한다. 또한 다양성에 따른 이익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된 이익(diffuse interests or benefits)이기도 하다. 당장은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꾀하는 태도이다. 계몽된 자기이익은 당장은 달갑지 않거나 혹은 개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결정일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익 관점은 설득의 논리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째는 다양성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민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거나 이주민이 강력 범죄에 얽히게 될 경우 이익 관점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어차피 이주에 따른 이득은 계산하기 어렵고, 금방 눈에 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익 논쟁은 자칫 지루한 담론 싸움으로 빠질 수도 있다. 둘째는 이익의 논리가 국가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6 밀(Mill, 2009: 157)은 유럽이 중국과 달리 정제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성격과 문화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냐하면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을 베풀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주체는 대체로 국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결과한 이주와 이주민의 권리요구가 “국민국가 경계 및 통합의 재구성과 맞물려 있”(황정미, 2010: 154)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영토를 경계 짓는 고유한 국가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과 모순을 빚는다.

첫 번째 위험은 다음 절의 옳음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두 번째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문화 다양성은 국가 공동체를 비롯하여 국가 이하 공동체와 국가 이상 공동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인식을 덧붙임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는 개별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4) 옳음

우리가 흔히 다문화사회라고 할 때 이는 세 가지 계기를 내포한다. 첫째는 인구구성의 다양화라는 현상의 변화, 둘째는 그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방안으로서 다문화정책의 실천, 마지막으로는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을 어느 정도 구현한 사회라는 다분히 가치 지향적인 계기를 지칭할 수 있다.⁷ 여기에서 말하는 옳음은 다문화사회가 내포하는 세 번째 부분과 관련된다.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이념, 즉 평등, 인간존중, 온전한 자유, 평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벤하비브(Benhabib, 2008: 24)는 “다른 국가로의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나 국경을 넘어서는 인구 이동을 다루는 헌법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들이 규범적인 지구촌 정의이론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문화

7 같은 맥락에서 김혜순(2008: 40)은 다문화사회를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수용성은 국가 간 인구 이동결과 나타난 인구구성 다양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벤하비브의 주장을 따르자면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지구화 시대의 정의 규범과 옳음(correctness)을 사고하는 데 중심에 놓인다. 정의와 인권의 확장, 더 많은 자유와 평등, 이를 통한 인간 자체의 고양과 더 높은 인간성 구현은 모든 시대의 과제이고, 크게 보아 인류 역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현대 사회가 더욱 교묘한 형태의 지배를 발전시켜왔다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방향성이 옳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이주의 시대’ 지구촌 정의규범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시대적 과제로서 의미도 가진다.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옳은 이유는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과 연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부침을 거듭할 수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깊숙한 후퇴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한번 도달한 민주주의 단계는 절대 불가역적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존에 성취한 민주주의의 수준을 유지하고, 더 질 높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주민과 그들의 유입이 낳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포용성이 증대되는 것은 소수자로서 이주민을 일상과 정치과정에서 포용하고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통치 받으면서도 통치 정당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이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타자에 의한 지배와 복종만이 허용되는 배제집단의 존재는 대표되지 않아도 되는 인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이용승, 2014: 199)을 연다. 반대로 다문화수용성 증대는 정치과정에 소수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넓힌다.

3. 다문화수용성 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담론

다문화수용성은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론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에 만연한 동일성 집착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성은 보통 국가에 대한 충성 내지는 애국심, 민족주의 의식에 근거한다. 동일성 혹은 동질성에 대한 집착은 이주민에 대한 이물감 혹은 이질감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현실과도 맞지 않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분절화와 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은 돌이킬 수 없다. 한국 사회는 당구공과 같이 균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부부터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다문화정책이 실제로는 동화정책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여지가 생긴다.

과거 독일은 한국과 같이 민족정서가 강한 국가였다. 그러나 2004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스스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고 이민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독일은 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정상회의’(Integration Summit)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시민적 애국주의에 기초하여 문화 다양성의 허용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제한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는 자주 테러의 대상이 되고 인종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의 차이와 인종갈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의 주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언급할 여유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별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담론의 확산에 연구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관련 연구자는 단지 객관성을 표방한 해석자 내지는 관찰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분석 또한 스스로 가치 판단에 따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담론에 복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자임했으면 한다. 다문화주의 혹은 이주민을 연구하는 개인이 모두 다문화주의자 혹은 이주민 권리 옹호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옹호이든 비판이든 어떤 가치판단이 글에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논의를 일으킬 때 우리는 현실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더욱 또렷하고 생산적인 이해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 논쟁에도 개입해야 한다. “한국의 반다문화적 정서는 정확한 사상적인 기반”을 결여한 채(김휘택, 2013: 329) 다문화주의와 이주민에 대한 반감에 가깝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다문화주의 정서가 논리와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와 옹호 논쟁은, 그것이 담론 수준에서 전개된다면 이주민 정책을 가다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담론으로서 주민권과 구성원권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주민권(denizenship)은 체류자격 내지는 법적 지위, 개인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단지 그/녀가 해당 지역(local)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와 지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권(membership)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법적 지위와는 일정 무관하게, 혹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을지라도 단지 그/녀가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고 부여받아야 하는 권리와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용승 2014: 197-8)이다. 누가 주민이고,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처우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⁸ 주민권과 구성원권 주장은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시민권)를 인정하는 가운데 보편적 인권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 주변 이주민을 우리와 같은 주민 혹은 지역과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수

8 주민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이용승(2016a) 참조.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다문화수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담론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용어의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는 통합의 이념이고, 다문화정책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문화’가 접두어로 사용되면서 특정한 부류 내지는 인간 집단을 호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인’ 등이 그러한 예이다. “‘다문화’라는 말은 ‘한국문화’와 ‘다문화’를 나누고, ‘한국인’과 ‘다문화인’ 사이에 경계를 설정”(염운옥, 2016)한다. 정책은 정책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정책, 그 하위 범주로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모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염운옥(2016)의 글에서 이주여성이 말한 것처럼 ‘다문화’에는 당연히 한국의 주류문화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 특정한 인간집단 만을 지칭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알 수 있다. ‘다문화’가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만을 지칭함으로써 이념 지향으로서 다문화주의는 담론의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반이주민의 의미를 덮어쓴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어 버렸다. 호칭은 국제혼인(결혼)가정(족), 이주(민)가정, 이주노동자, 이주배경아동,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하면 될 문제이다.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이민(주)정책으로 하면 된다.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주로 주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 내지는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을 따로 호명할 까닭이 없다고 본다.

2) 교육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역시 교육이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그동안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양적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이기도 하다. 예비 교사 및 기성 교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었

다. 정부 또한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커리큘럼 전체를 반차별의 견지에서 성찰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교육과정에 일부 다문화교육을 포함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리큘럼 전체를 반차별, 반편견 관점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뱅크스(James A. Banks, 2011: 291)는 다문화적 교육과정 개편의 접근법을 기여적 접근법(contributions approach), 부가적(additive) 접근법, 변혁적(transformative) 접근법,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접근법으로 나눈 바 있다. 기여적, 부가적 접근법이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채 내용, 개념, 관점 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나머지 두 접근법은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변혁적 접근법은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 및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쟁점, 사건, 주제를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회 행동 접근법은 학생들의 실천과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대체로 부가적 접근법에 가깝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구조 및 목적의 변화 없이 종종 책, 단원 또는 교육과정을 수업에 첨가시키는 방식”(Banks, 2011: 294)이다. 모경환 외(2011: 263-4)는 교육과정 속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과 내용에 다문화 관련 요소가 나올 때 다문화적 내용을 추가 또는 통합하는 방법, 다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독립된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 별도의 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부가적 접근법과 대체로 일치한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부가적 접근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차별, 반편견의 견지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 평가에 기초한 교육과정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고, 지식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문화수용성이 지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는 학생들의 실천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향후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수용성(acceptance) 내지는 감수성(sensitivity)보다

는 다문화 시민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일반 시민이 다문화라는 현실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혹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면 후자는 민주주의 혹은 공화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하는 여러 자질(virtue) 가운데 자신과 다른 문화를 존중,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⁹ 전자는 일종의 지표로서 사실에 충실하다면 후자는 역량(competence)으로서 가치 지향을 내포한다. 또한 전자가 주로 국내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경계를 넘는 코즈모폴리탄(cosmopolitan) 시민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모호함이 없지 않다. 실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은 인식과 태도, 실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역량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상수, 2012: 44). 그러나 시민교육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이 있다. 다문화 시민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시민성¹⁰의 고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학교교육과 일반시민교육 모두를 포괄한다. 다문화 역량은 지구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생산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을 배가하고,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의 정당성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수행할 때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9 베넷(Bennett, 1995: 263)은 “자신과 다른 의식적 커뮤니케이션(언어, 기호, 제스처), 무의식적 신호(몸 언어, 관습과 문화 양식을 해석하는 능력)를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이라고 규정한다. 스튜어트(Stuart)에 따르면 다문화 역량이란 “개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라는 견지에서 개인의 독특함을 이해하고 이와 건설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만 이러한 역량은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의 경우 교사, 후자의 경우 심리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여기에서는 다문화역량을 문화적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는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요청되는 자질로서 간주하였다.

10 시민성(citizenship)은 보통 법적 지위, 권리, 정체성의 요소를 갖는다. 여기에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다문화 시민성은 시민적 덕성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다문화 시민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화 외(2011) 참조.

다. 근대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서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고안물”(Mill, 2009: 225)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은 동질화하는 힘과 구심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관점을 취한다. 교육과정 구조의 변경이 그만큼 어려운 까닭이다. 어떻게 이런 상반되는 경향성을 조율할 것인가는 교육과정 변화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시론적으로는 양자의 근원적 긴장과 모순을 인정한 가운데, 상호 지양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다문화 시민교육의 관점이 유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 시민교육은 헌정체제 준수 및 시민적 의무 등 시민의 공통된 덕성을 지향하되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교육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은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피로감의 농도를 묶게 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꾼 이유는 다문화수용성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일반 국민들이 갖는 정책 피로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피로감은 반다문화 정서의 확산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 이주민 대표가 사라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결혼이주민과 북한이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주민은 비례대표로 진출하지 못했다. 심지어 주요 3당은 이주민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풍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핀 이주여성인 이자스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난과 그로 인한 논란, 국민의 반다문화정서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대단히 허약한 토대 위에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시중의 유행에 따라 정치권이 반응한 이 사례는 아직까지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¹

정책 피로감 완화를 위해 먼저 언급할 바는 정책 대상의 확대이다.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그 명칭(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명(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집중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이 가능한 예비 국민이기 때문에 여타의 이주민에 비해 정책 비중이 높은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나 다문화사회 지향이 결혼이주민만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닐 것이다. 향후 한국에 이주민이 꾸준히 늘 것이라는 예측도 ‘전체’ 이주민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민 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은 모든 이주민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할 때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제 동화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

그간의 다문화정책에서 이주민 문화에 대한 고려는 인정(recognition)보다는 “이주민 출신 국가의 음식, 의복, 공연 등 비교적 사소한 요소를 나열하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였다.”(Lee, 2016: 31). 문화의 사소화(trivializ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책적 피로감을 높이고 다문화수용성을 정체하게 한 원인이다. 이국적 문화요소에 대한 관심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주민의 문화가 그들의 삶에서 갖는 의미에 천착하고, 개별문화에 대한 존중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식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주민을 특별하게 대우하거나 구별된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가능한 주류와 같은 범주의 정책 대상 혹은 주체로 대우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화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을 국내에 있는 여러 가족 형태 가운데 한 종류로 간주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건

11 사회적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주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이 사례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시혜성 내용이 많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² 다만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기능은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더라도 이주민 대상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향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¹³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친절한 무시’(benign neglect)와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관계이다. 소수자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누가 소수자인지를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를 특정하는 즉시 소수자는 타자화 혹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고,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친절한 무시’가 이주민과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적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주류화 전략은 양자의 이러한 모순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주류화 전략이 주류주민과 이주민의 접촉 빈도를 높여 다문화수용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입법의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차별금지의 법적 강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 제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통 법은 한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도덕의 최저한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 관련한 도덕적 요청에 그만큼 반응했다는 징표가 된다.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지만 차별금지법은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2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을 구분해서 서비스하는 제도 자체를 바꿔 함께 하는 문화를 확대”(충청투데이 2016/06/09)하고자 했다고 말한 바 있다.

13 참고로 김혜순(2014: 331)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실상 “가족정책이 아닌 여성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분야에서도 교육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요 정책의 입안이나 법률제정 시에 차별 및 편견 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이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각 급 정부 입법이나 조례, 대부분의 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경험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성차별을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반대의 관점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근본적으로 국민 다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자보호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추어 나가야 한다. 사실 이것이 근본이다.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 운영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은 사회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내모는 현실은 공명한다. 양자 모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범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이 현실에서 겪는 좌절과 분노를 다른 소수자에게 투사한 경우라고 하겠다. 희생제의에서 희생양은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거나 못한 또 다른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구조는 거대하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는 늘 보이고, 그들과 생활공간을 나눈다. “거대한 구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 구조에 대한 불만을 그들을 매개삼아 터뜨린다.”(이용승, 2016b: 12). 혐오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향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이주민을 향한 다문화감수성이 정체되고 있는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약자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때 다문화감수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과제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에 대신하여: 다문화수용성과 사회통합

지금까지 왜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 보았다. 다문화수용성 증대의 이유로는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정책 구현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전제 아래 사실, 당위, 이익, 옳음의 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네 가지 정당화 논리는 서로 겹치는 것은 물론 상호 규율관계에 있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담론과 교육, 정책을 제시하였다. 담론 으로서는 한국 사회의 이질성, 연구자의 역할, 반다문화주의 논쟁 활용, 주민 권/구성원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다문화’의 폐지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조 변경과 커리큘럼의 전반적 변경을 말 하고, 다문화시민성 함양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이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책으로서는 다문화정책이 야기하는 정책 피로감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대상의 확대, 문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 반영, 차별금지법 제 정, 정책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영향분석평가 등을 언급하였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약자보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다문화화뿐만 아니라 지구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체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을 마주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 개별 구성원과 사회전체적인 다문화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수단이다.

다문화수용성은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주로 이주민을 향해 있었던 것과 달리 주류를 향한다. 물론 이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관용, 포용, 수용은 주류의 몫인 경우가 더 많다.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단지 정부가 시행하는 이주민정책의 정당성과 지지를 높이는 목적을 넘어 주류와 이주민 모두를 위한 다문화시민성 함양을 지향한다면 결과 적으로 다문화정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가치에 한층 다가간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황정미(2010: 154)의 말대로 다문화수용성은 “기존 한국인 정체성에 이주민을 어떻게 삼입 혹은 통합할 것

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인 정체성의 재구성과 그 안에 내재하는 모순 및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사회통합 문제와 떨어져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이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민과 독재시대 동원의 역사는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단일민족의식이나 순혈주의는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주의의 특성상 이러한 인식은 한국 주류 국민들의 마음에 도저한 저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저류는 가끔 외국인 혐오 단체의 시위나 인터넷상의 반외국인 감정 표출과 같은 행위로 왜곡된 채 돌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민족의식을 동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정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구성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질성의 강조만으로는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다문화수용성 내지는 다문화역량이 의미를 얻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사회통합이 단지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적 가치, 이를테면 자유와 평등, 존엄성 등의 고양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러한 혜택에서 꾸준히 배제되거나 차별적으로 접근 기회가 주어지는 집단이 있는 사회는 통합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사회통합과 배제는 양립할 수 없다. 통상 배제 집단은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다. 소수자에 대한 주류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반영되고 제도는 합법적으로 소수자를 차별한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주류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한다. 주류 시민의 인식 변화가 목표인 다문화수용성 제고가 곧바로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고리는 이와 같다.

다문화수용성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연대의 관점에서도 해명할 수 있다. 국가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단위의 공동체는 구성원간 연대의 강도 혹은 질에 따라 결속할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다. 동료 시민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연대감

14 참고로 강원택(2007), 최현(2007), 윤인진 외(2009)는 근래 한국 사람들의 국민 정체성 판단에서 전근대적인 종족적 요인보다 근대적인 시민적 요인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을 형성한다. 연대감의 확장은 해당 공동체의 질적 향상을 낳는다. 다문화수용성의 증대는 이주민을 단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을 넘어 연대의 일 주체로 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문화수용성 제고 노력은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앞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과 매여야 한다. 이주민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받아들인 이주민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이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다문화정책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주민과 공존은 어떻게 가능하며, 한국의 경험은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따위와 같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오가는 과정은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의 앞날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줄 것이다. 다만 한국이 곧 인구가 줄면서 인구절벽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전후 호주의 이민장관(Arthur A. Calwell)은 ‘인구증가 아니면 소멸’(populate or perish)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한국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이민 수용은 유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 서술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정당화 논리와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는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책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 정치, 동아시아연구원.

- 구정화·박선웅, 2011,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 연구, 43(3), 1-27.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물이민적·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48(1), 299-344.
- 김희택, 2013, 반다문화주의, 정체성, 민족, 다문화콘텐츠연구, 15, 305-333.
-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모경환·임정수, 2011,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7(1), 261-290.
- 안상수, 2012, 다문화 수용성과 젠더, 젠더리뷰, 25, 42-52.
- 여성가족부, 2016. 5. 18, 보도자료: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다문화가족정책과.
- 염운옥, 2016. 04, '다문화' 담론 비판, 사람과 글 人·文(민족문화연구원 웹진 민연), 출처: <http://rikszine.korea.ac.kr/front/main/index.minyeon>(검색일: 2016. 06. 21).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 사회학 대회 논문집, 579-591.
- 이용승, 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48(5), 185-206.
- 이용승, 2016a,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 4-25.
- 이용승, 2016b,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 4-23.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227.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6년 4월 통계월보, 이민정보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황성욱·조운용·이철한, 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167-196.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Banks, James A & Cherry A. McGee Banks, 차윤경 외 역,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서울: 박학사.
- Benhabib, Seyla, 2008,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서울: 철학과 현실사.
- Bennett, Christine I, 1995, Preparing teachers for cultural diversity and national standards of academic excellen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6(4), 259-265.
- Castles, Stephen & Mark J. Miller, 2013,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 Kymlicka, W, 장동진 외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파주: 동명사.
- Lee, Yongseung, 2016, Multiculturalism and Anti-multiculturalism Phenomena in South Korea, *The Gakushui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 17-36.
- Levy, Jacob T, 2000, *The multiculturalism of Fear*, Oxford: OUP, 3-18.
- Mill, John S, 박홍규 역, 자유론, 서울: 문예출판사.
- Stuart, Richard B, 2004, Twelve practical suggestions for achieving multi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1), 3-9.
- 다누리 www.liveinkorea.kr
- 정책뉴스 www.korea.kr
- 충청투데이 www.cctoday.co.kr

2016.6.20 투고일, 2016.6.21 심사일, 2016.6.25 게재확정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hy and How to do It?

Yong-Seung Lee*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reason why and how to rais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n the premise that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has the instrumental meaning of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the reason for the raising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s proposed 'fact,' duty or must, interest, justice or correctness. Four logics are mutually overlapping and restrict each other. As the measures for enha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I suggest the discourse, education and policy. The heterogeneity of the Korean society, the role of researchers, the utilization of anti-multiculturalism, denizenship/membership, and the abolition of 'multiculture' that refers to specific people are stated as the discourse. In the education sector, the overall transformation of curriculum structure and civic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on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are pointed out. As the policy, the enlargement of objects of policy, reflecting full-fledged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mpact assessment about all policies and acts are mentioned, which has the ends for the reducing the policy fatigue. More fundamentally, I argue that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weak must be equipped for the raising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r sensibility.

Keywords Mult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Denizenship, Policy Fatigue

* Daegu University, Professor, Politics, yiyongseung@gmail.com